

검사공무원증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80px; height: 80px; margin: 0 auto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 사진 (3.5cm×4.5cm) </div>
제 호 직 명 : 성 명 :	
위의 사람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	
유효기간 . . .부터 . . .까지	
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right: 10px;">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-right: 10px;">}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인</div> </div>	

93mm×65mm
(보존용지(1종) 120g/m²)

(뒤 쪽)

유 의 사 항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. 2. 이 증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. 3.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때에는 곧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합니다. 4.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행처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